

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지정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
		30일
신청인	기관·단체 또는 법인명(설립연도) (년 월 일)	사업자등록번호
	주소 또는 소재지(전화번호 및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)	
	대표자명	
	주요 업무내용	

「식품위생법」 제70조의8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5제1항에 따라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

첨부서류	1.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.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50조의5제2항제2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. 법 제70조의8제1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법인 등기사항증명서

처리절차

